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실태와 성과

윤 조 덕\*

## I.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9만여 명의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으며, 그 중 3만7천 명 내외의 산재장해인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재장해인의 발생은 산재발생 후 요양기간의 장기화, 장해급여의 지급 등으로 산재보험 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산재근로자의 실업, 소득 저하 등으로 인한 가정경제 피해 및 사회적 비용증대 그리고 더 나아가 노동시장에서 기 능인력 상실로 인한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2020년부터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어 총인구의 감소가 예상되며,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7년부터 감소가 예상되고<sup>2)</sup> 있는 이 때에 산재장해근로자의 직업훈련을 통한 직업복귀는 산재근로자 외 그의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 (사)한국사회정책연구원 부원장.

- 1) 최근 3년간 당해 연도 신규 발생 산업재해자수와 산재장해근로자수는 각각 2008년 95,806명, 37,318명, 2009년 97,821명, 35,273명, 2010년 98,645명, 37,440명이다(고용노동부, 『산업재해분석』, 각년도).
- 2) 대통령정책자문기획위원회(2006)의 「사회비전 2030 - 선진복지국가를 위한 비전과 전략」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부터는 핵심 인구집단인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 이는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인 노동력 공급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 II. 산재보험 직업훈련사업의 종류

산재보험의 직업훈련은 두 가지 방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하나는 법정급여로서 직업재활급여인 직업훈련비용(산재보험법 제73조)과 직업훈련수당(법 제74조)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직업재활급여제도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sup>3)</sup>. 다른 하나는 산재보험 예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업훈련사업이다(‘예산사업’)<sup>4)</sup>.

직업재활급여 대상자는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8년 7월에는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직업훈련 신청 당시 60세 미만이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였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2010년 4월 28일부터는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요양중인 산재근로자’<sup>5)</sup>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표 1〉 직업훈련 선발 대상자 확대(2010. 4. 28)

	확대 전	확대 후
직업재활급여 대상자	○장애등급 제1~9급	○장애등급 제1~12급 ○요양중 산재근로자
예산사업 대상자	○ 장애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08. 7. 1~’10. 4. 27 장애판정자 중 장애 제 10~12급) ○ 장애판정일 1년되는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장애 제1~12급 중 직업훈련을 한번도 받지 않은 자)	장애판정일 1년되는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자료: 근로복지공단(2011), 「2010년 직업훈련지원사업 실적분석」, 내부자료.

- 3) 산재보험의 법정 직업재활급여제도 도입은 2006년 5월부터 동년 12월까지 운영된 노사정위원회 산 업재해보상보험제도개선위원회의 합의항목 80개 중 하나이다. 이에 의거하여 2007. 12. 14 산재보험법 개정(법률 제8694호)과 뒤이은 2008. 6. 25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20875호)에 반영되었다.
- 4) 직업훈련 지원은 산재장해인이 직업훈련기관 및 사설학원 등에서 직업훈련을 희망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동안 직업훈련은 1985년 안산과 1992년 광주에서 재활훈련원을 개설하고 직접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하여 왔다. 이들 훈련원의 지역적 편중 및 훈련직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반 사설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에도 그 비용을 지원하였는데, 2007년부터는 이들 훈련원을 폐쇄하고 민간기관에 위탁해 오고 있다. 2008년 7월부터는 직업훈련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산재장애등급 제1~9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에 대해서는 직업재활급여로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예산사업으로 지원되어 오던 직업훈련 지원내용도 다소 변경되었다(고용노동부(2010), 『2009년도 산재보험사업연보』, p.154).
- 5)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8조(직업재활급여 대상자) 제1항 제1나호: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중으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후에도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2010. 3. 26 신설).

예산사업에 의한 직업훈련 대상자는 2008. 7. 1~2010. 4. 27 산재장해 판정자 중 산재장해등급 제10~12급 해당자는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또는 산재장해등급 제1~12급 중 직업훈련을 한번도 받지 않은 자는 장해판정일 1년되는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을 요건으로 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2010년 4월 28일부터 장해판정일 1년되는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신청으로 확대되었다(표 1 참조).

### Ⅲ. 직업훈련사업 지원금액 기준

산재장해인이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지원비용은 훈련기관에 지급되며 훈련수당은 본인에게 지급된다.

#### 1 직업재활급여 대상 확대 및 상한금액의 인상

2010년 4월 28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산재보험법 제73조 제3항에 따른 직업훈련비용 상한금액은(노동부고시 제2010-34호, 2010년 4월 27일) 훈련생 1인당 직업훈련비용 6,000,000원, 한국장애인공단의 산재장애인 1인당 위탁훈련비용 8,000,000원, 산재보험법 제75조 제2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상한금액은 장해등급 제1~3급 월 600,000원, 장해등급 제4~9급 월 450,000원, 장해등급 제10~12급 월 300,000원, 산재보험법 제75조 제3항에 따른 직장적응훈련비 상한금액 월 450,000원, 산재보험법 제75조 제3항에 따른 재활운동비 상한금액 월 150,000원이다<sup>6)</sup>.

직업재활급여에 의한 직업훈련수당은 직업훈련을 받는 대상자에게 그 직업훈련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최저임금액에 상당하

6) 직업재활급여제도가 처음 도입·시행된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산재보험법 제73조 제3항에 따른 직업훈련비용 상한금액은 (노동부 고시 제2008-44호, 2008년 7월 1일) 훈련생 1인당 직업훈련비용 1,500,000원, 한국장애인공단의 산재장애인 1인당 위탁훈련비용 8,000,000원, 산재보험법 제75조 제2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상한금액은 장해등급 제1~3급 월 600,000원, 장해등급 제4~9급 월 450,000원, 산재보험법 제75조 제3항에 따른 직장적응훈련비 상한금액 월 450,000원, 산재보험법 제75조 제3항에 따른 재활운동비 상한금액 월 150,000원이다. 이후 2009년 4월 1일부터는 산재보험법 제73조 제3항에 따른 직업훈련비용 중 훈련생 1인당 직업훈련비용 상한금액이 6,000,000원으로 인상되었다(노동부 고시 제2009-8호, 2009년 4월 1일). 2010년 4월 27일부터는 산재보험법 제75조 제3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이 장해등급 제10~12급에게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노동부 고시 제2010-34호, 2010년 4월 28일).

는 금액이다. 다만,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4조(직업훈련수당) 제1항7).

## 2. 예산사업에 의한 직업훈련수당 지원<sup>8)</sup>

산재장해인이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며, 역(歷)에 따라 정해진 달의 출석률이 80% 이상인 훈련생에게만 지급되며, 기준수당인 1일당 최저임금의 50% (기준수당)를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해당 훈련 직종 또는 훈련 과정<sup>9)</sup>의 직업훈련기간 또는 시간이 1일 4시간 이상이고, 1주 동안 20시간 이상이면서 4일 이상이며, 1개월 동안 8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직업훈련기간의 일수에 대하여 1일당 최저임금액의 50%를 지급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일 훈련시간이 4시간 이상인 때에는 직업훈련을 받은 날의 일수에 대하여 1일당 최저임금액의 50%를 지급하고, 1일 훈련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받은 날에 대하여 1일당 최저임금액의 25%를 지급하다가 2009년 7월 1일부터는 1일당 최저임금액의 40%를 지급하며, 2시간 미만의 훈련에 대하여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IV. 직업훈련사업 실시현황 및 분석

### 1 예산집행 현황

2010년 직업훈련지원사업 집행금액 중 예산사업은 3,362백만 원이며, 직업재활급여는 2,438백만 원이다(표 2 참조).

예산사업은 2008년 12,495백만 원에서 2009년 6,240백만 원 그리고 2010년 3,362백만

7)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수당을 받는 자가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직업훈련수당을 합한 금액이 그 근로자의 장해보상연금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직업훈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8) 고용노동부(2010), 『2009년도 산재보험사업연보』, p.155.

9) 훈련직종 및 과정은 ‘자격기본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과 연계되는 훈련 직종,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우선선정 직종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 직종 또는 과정이며, 예산사업에 의한 직업훈련 대상자의 경우 직업재활급여 대상자와 달리 원격 직업훈련 직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용노동부(2010), 『2009년도 산재보험사업연보』, p.155).

<표 2> 산재보험의 산재장해인 직업훈련 예산집행 현황(2008~2010)

	예 산 사 업			직업재활급여		
	예산	집행액	집행률	예산	집행액	집행률
2008	15,059	12,495	82.9	9,834	18	0.2
2009	6,243	6,240	99.9	1,271	1,161	91.3
2010	3,363	3,362	99.9	4,307	2,438	56.6

자료 : 근로복지공단(2011), 「2010년 직업훈련지원사업 실적분석」, 내부자료.

원으로 매년 감소하였다. 반면에 직업재활급여는 2008년 18백만 원에서 2009년 1,161백만 원 그리고 2010년 2,438백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예산사업의 급격한 감소는 2008년 7월 1일부터 새로이 도입·적용되고 있는 직업재활급여제도에 기인한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직업재활급여 집행액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에서도 알 수 있다.

## 2. 직업훈련 인원, 성별, 장애등급별 현황

예산사업에 의한 직업훈련 인원은 2010년 2,076명을 선발하여 이 중 1,423명(68.5%)이 수료율을 하였다. 수료자 중 직업복귀자는 1,191명으로 직업복귀율은 83.7%이다(표 3 참조). 이와 같은 직업복귀율은 2008년(67.9%), 2009년(67.9%)보다 향상되었다. 직업재활급여에 의한 직업훈련 인원은 2010년 1,303명을 선발하여 이 중 750명(57.6%)이 수료율을 하였다. 수료자 중 직업복귀자는 343명으로 직업복귀율은 45.7%이다(표 4 참조). 이와 같은 직업복귀율은 2009년(37.4%)보다 향상된 것이다.

직업훈련 선발자의 성별 분포는 2010년 예산사업의 경우 선발자 2,076명 중 남성 78.5%, 여성 21.5%이며, 2009년과 비교하면 남성은 2.1%p 증가한 것이다<sup>10)</sup>. 직업훈련급여의 경우는 2010년 선발자 1,303명 중 남성 86.9%, 여성 13.1%이며, 이와 같은 성별 분포를 2009년과 비교하면 남성은 0.3%p 증가한 것이다<sup>11)</sup>.

직업훈련 선발자의 장애등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2010년 예산사업의 경우 장애등급 제 10~12급이 93.6%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장애등급 제8~9급(3.2%), 장애등급 제4~7급(3.1%), 장애등급 제1~3급(0.1%)의 순이다<sup>12)</sup>. 선발자 중 장애등급 제10~12급의 비중은

10) 근로복지공단(2010), 「2009년 직업훈련지원사업 실적분석」, 내부자료 및 근로복지공단(2011), 「2010년도 직업훈련지원사업 실적분석」 내부자료 참조.

11) 근로복지공단(2010), 「2009년도 직업훈련지원사업 실적분석」, 내부자료 및 근로복지공단(2011), 「2010년도 직업훈련지원사업 실적분석」 내부자료 참조.

12) 근로복지공단(2011), 「2010년도 직업훈련지원사업 실적분석」, 내부자료 참조.

<표 3> 예산사업 직업훈련 지원 현황

(단위: 명, %)

	목표 인원 (A)	선발 인원 (B)	목표 달성률 (B/A)	수료 인원	직업복귀			직업 복귀율	중단자
					소계	취업	자영		
2008	4,814	4,428	92	3,606	2,449	2,217	232	67.9	263
2009	2,560	4,639	181.2	3,684	2,502	2,294	208	67.9	635
2010	1,850	2,076	112.2	1,423	1,191	1,073	118	83.7	382

주: 수료인원: 중복수료자의 경우 1회만 산정  
 자료: 근로복지공단(2011), 「2010년 직업훈련지원사업 실적분석」, 내부자료.

<표 4> 직업재활급여 직업훈련 지원 현황

(단위: 명, %)

	목표 인원 (A)	선발 인원 (B)	목표 달성률 (B/A)	수료 인원	직업복귀				직업 복귀율	중단자
					소계	원직 복귀	취업	자영		
2008	3,295	36	1.1	1	0	0	0	0	0.0	4
2009	4,972	747	15	340	127	0	115	12	37.4	70
2010	1,750	1,303	74.5	750	343	4	312	27	45.7	166

주: 수료인원: 중복수료자의 경우 1회만 산정.

2008년 42.0%, 2009년 67.5%, 2010년 93.6%로 매년 증가하였으며, 그 사유 중의 하나는 2009년 7월 1일 이후에는 장애등급 제10~12급만 예산사업으로 지원한 데에 기인한다. 직업재활급여의 경우 직업훈련 선발자의 장애등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2010년 장애등급 제8~9급이 40.8%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장애등급 제10~12급(34.7%), 장애등급 제4~7급(23.2%), 장애등급 제1~3급(0.5%)의 순이다<sup>13)</sup>. 2009년도에는 선발자 747명 중 장애등급 제8~9급 65.2%, 장애등급 제4~7급 34.7%, 장애등급 제1~3급 0.1%이며, 장애등급 제10~12급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다.

### 3.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 지급 현황(2009~2010)

예산사업에 의한 직업훈련비용 지원건수 및 금액은 2010년 총 9,544건에 3,362백만 원이다. 이 중 훈련비용이 5,539건(58.0%), 2,209백만 원(65.7%)이며, 훈련수당은 4,005건(42.0%), 1,154백만 원(34.3%)이다(표 5 참조). 이를 2009년과 비교하면 훈련비용은 지급건수 53.7% 감소, 지급금액 43.9% 감소하였으며, 훈련수당은 지급건수 59.7% 감소, 지급금액 50.6% 감소하였다.

13) 근로복지공단(2011), 「2010년도 직업훈련지원사업 실적분석」, 내부자료 참조.

<표 5>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 지급현황

(단위: 건, 백만 원, %)

		총 계		훈련비용		훈련수당		직업준비금	
		지급건수	금액	지급건수	금액	지급건수	금액	지급건수	금액
예산 사업	'09	21,940 (100.0)	6,275 (100.0)	11,975 (54.6)	3,937 (62.7)	9,939 (45.3)	2,335 (37.2)	26 (0.1)	4 (0.1)
	'10	9,544 (100.0)	3,362 (100.0)	5,539 (58.0)	2,209 (65.7)	4,005 (42.0)	1,154 (34.3)	-	-
직업 재활 급여	'09	2,869 (100.0)	1,161 (100.0)	1,511 (52.7)	540 (47.3)	1,358 (46.5)	621 (53.5)	해당없음	
	'10	5,346 (100.0)	2,438 (100.0)	2,960 (55.4)	1,247 (51.2)	2,386 (44.6)	1,191 (48.8)		

자료: 근로복지공단(2011), 「2010년 직업훈련지원사업 실적분석」, 내부자료.

직업재활급여에 의한 직업훈련비용 지원건수 및 금액은 2010년 총 5,346건, 2,438백만 원이다. 이 중 훈련비용이 2,960건(55.4%), 2,386백만 원(44.6%)이다. 이를 2009년과 비교하면 훈련비용은 지급건수 95.9% 증가, 지급금액 130.9% 증가, 훈련수당은 지급건수 75.7% 증가, 지급금액 91.8% 증가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에는 2009년에 비하여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의 건수 및 금액이 예산사업의 경우는 감소하였으며, 반면에 직업재활급여사업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 4. 평균 훈련기간 현황

예산사업에 의한 직업훈련은 2010년 훈련선발자 1인당 평균 훈련기간은 월 2.4개월로 2009년(2.8개월)보다 0.4개월 감소하였으며, 이는 2008년(3.5개월)<sup>14)</sup>보다는 1.1개월 감소한 것이다. 또한 직업재활급여에 의한 직업훈련은 2010년 훈련선발자 1인당 훈련기간은 2.6개월로 2009년(3.1개월)보다 0.5개월 감소하였다(표 6 참조).

이와 같은 직업훈련기간의 감소요인 중의 하나는 예산사업 직업훈련의 경우 200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2008년 6월 30일 이전에 치료종결하고 장해판정받은 산재장해인에게 예산 지원을 하여 한시적 기간에 짧은 직업훈련을 선택해 지원한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계장비분야에 속한 운전직종의 대형운전면허 등의 단기간 훈련직종을 선택하여 평균 훈련기간이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sup>15)</sup>. 또한 직업재활급여 평균 훈련기

14) 근로복지공단(2009), 「2008년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 현황분석」, p.9.

15) 근로복지공단(2010), 「2009년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 현황분석」, pp.30-31.

<표 6> 1인 평균 훈련기간 및 훈련비용(2009~2010)

(단위: 월, 일, 시간, 원)

		평균 훈련기간	주당 평균 훈련일수	1일 평균 훈련시간	1인 평균 약정 훈련비용	1인 평균 지급 훈련수당
예산	2009	2.8	4.6	3.1	954,033	645,981
	2010	2.4	4.7	3.3	1,086,971	831,969
급여	2009	3.1	4.7	3.2	1,165,157	1,393,874
	2010	2.6	3.6	2.6	1,239,996	1,438,268

자료: 근로복지공단(2011), 「2010년 직업훈련지원사업 실적분석」, 내부자료.

간 단축도 단기간 훈련을 받는 직업훈련직종(대형운전면허 등)의 신청자 증가 등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짧은 훈련기간은 훈련수료 후 직업복귀를 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의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 5. 직업훈련 수료자 현황 및 분석

### 가. 성별 및 연령대별

직업훈련 수료자의 2010년 성별 분포는 예산사업(1,423명)의 경우 남성 78.1%, 여성 21.9%이며, 직업재활급여(750명)의 경우 남성 87.6%, 여성 12.4%이다. 이와 같은 연령별 분포는 2009년 예산사업 직업훈련 수료자(3,648명)와 비교하면 남성 2.8%p 감소, 직업재활급여 직업훈련 수료자(340명)와 비교하면 남성 3.3%p 감소한 것이다.

이상 2009년과 2010년 직업훈련 수료자의 성별 분포 비교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에 비해 2010년에는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훈련 수료자의 연령별 분포는 2010년 예산사업의 경우 직업훈련 수료자(1,423명) 중 50대가 42.2%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40대(33.9%), 30대(18.4%), 20대(5.6%)의 순이다(표 7 참조). 이와 같은 연령별 분포는 2009년도 직업훈련 수료자(1,347명)와 비교하면 50대 이상이 5.6%p 증가, 40대가 4.7%p 감소, 30대가 0.4%p 감소, 20대가 0.3%p 감소한 것이다.

직업재활급여에 의한 2010년 직업훈련 수료자(750명) 중 50대가 40.7%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40대(38.5%), 30대(15.9%), 20대(4.7%), 10대(0.3%)의 순이다. 이와 같은 연령별 분

<표 7> 직업훈련 수료자 성별·연령별 현황(2010)

(단위: 명, %)

	성별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예산사업	남자	1,111 (78.1)	-	73	225	382	431
	여자	312 (21.9)	-	6	37	100	169
	계	1,423 (100.0)	-	79 (5.6)	262 (18.4)	482 (33.9)	600 (42.2)
직업재활 급여	남자	657 (87.6)	2	33	116	250	256
	여자	93 (12.4)	-	2	3	39	49
	계	750 (100.0)	2 (0.3)	35 (4.7)	119 (15.9)	289 (38.5)	305 (40.7)

자료: 근로복지공단(2011), 「2010년 직업훈련지원사업 실적분석」, 내부자료.

또는 2009년도 직업훈련 수료자(340명)와 비교하면 50대 이상이 6.3%p 증가, 40대가 3.0%p 감소, 30대가 4.7%p 감소, 20대가 1.2%p 감소, 10대가 0.3%p 증가한 것이다.

이상 2009년과 2010년 직업훈련 수료자의 연령별 분포 비교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에 비해 2010년에 50대 이상 수료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반면, 타연령대에서는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직업훈련 수료자 장애등급별 현황

예산사업에 의한 2010년 직업훈련 수료자(1,423명)의 산재장애등급별 분포는 장애등급 제10~12급이 94.1%(1,339명)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장애등급 제8~9급(2.7%), 장애등급 제4~7급(3.1%), 장애등급 제1~3급(0.1%)의 순이다(표 8 참조). 이와 같은 분포는 2009년과 비교하면 장애등급 제10~12급이 39.7% 증가, 장애등급 제8~9급이 13.2% 감소, 장애등급 제4~7급이 21.8% 감소, 장애등급 제1~3급이 0.7% 감소한 것이다.

직업재활급여 2010년 직업훈련 수료자의 장애등급별 분포는 장애등급 제8~9급이 49.5%(371명)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장애등급 제4~7급(26.3%), 장애등급 제10~12급(23.9%), 장애등급 제1~3급(0.4%)의 순이다. 이와 같은 분포는 2009년과 비교하면 장애등급 제8~9급이 16.6% 감소, 제4~7급이 6.8% 감소, 장애등급 제1~3급이 0.4% 감소한 것이며, 2009년에는 장애등급 제10~12급에게 적용이 되지 않았다.

이상 2009년과 2010년 직업훈련 수료자의 장애등급별 분포 비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산사업의 경우 장애등급 제10~12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반면에

<표 8> 직업훈련 수료자 장애등급별 현황(2010)

(단위: 명, %)

	전 체	1~3급	4~7급	8~9급	10~12급
예산사업	1,423 (100)	1 (0.1)	44 (3.1)	39 (2.7)	1,339 (94.1)
직업재활급여	750 (100)	3 (0.4)	197 (26.3)	371 (49.5)	179 (23.9)

자료: 근로복지공단(2011), 「2010년 직업훈련지원사업 실적분석」, 내부자료.

타장해등급에서는 감소하였다. 직업재활급여의 경우 장해등급 제10~12급의 신규 적용과 더불어 타장해등급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다.

다. 직업훈련 수료자 훈련직종별 현황, 수료 후 직업복귀 현황 및 연관성

예산사업에 의한 2010년 직업훈련 수료자(1,423명)의 훈련분야별 분포는 기계장비분야가 41.3%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서비스분야(26.4%), 사무관리분야(10.7%), 건설분야(6.5%), 의료분야(4.4%)의 순이다(표 9 참조). 2009년의 경우 수료자(3,684명) 중 가장 많은

<표 9> 직업훈련 수료자의 훈련분야별 현황

(단위: 명, %)

	예산사업				급여사업			
	2009		2010		2009		2010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 체	3,684	100	1,423	100	340	100	750	100
기계장비분야	1,441	39.1	587	41.3	149	43.8	304	40.5
서비스분야	1,094	29.7	376	26.4	99	29.1	192	25.6
사무관리분야	486	13.2	152	10.7	29	8.5	97	12.9
의료분야	155	4.2	62	4.4	18	5.3	31	4.1
건설분야	125	3.4	93	6.5	4	1.2	28	3.7
정보통신분야	89	2.4	33	2.3	4	1.2	27	3.6
전기분야	59	1.6	22	1.5	3	0.9	8	1.1
산업응용분야	68	1.8	50	3.5	18	5.3	36	4.8
섬유분야	25	0.7	11	0.8	2	0.6	4	0.5
농림어업광업분야	51	1.4	16	1.1	5	1.5	5	0.7
공예분야	26	0.7	11	0.8	5	1.5	9	1.2
화학제품 및 요업분야	26	0.7	5	0.4	1	0.3	-	-
전자분야	37	1.0	4	0.3	3	0.9	5	0.7
기타	2	0.1	1	0.1	-	-	4	0.5

자료: 근로복지공단(2011), 「2010년 직업훈련지원사업 실적분석」, 내부자료.

기계장비분야(1,441명)에 속한 운전직종이 1,104명으로 전체의 30.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서비스분야(1,094명)에 속한 음식서비스 직종이 984명으로 전체의 26.7%를 차지하고 있어<sup>16)17)</sup>, 이들 두 직종이 2,088명으로 전체 수료자의 56.7%를 점하고 있다.

직업재활급여 2010년 직업훈련 수료자(750명)의 훈련분야별 분포는 기계장비분야가 40.5%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서비스분야(25.6%), 사무관리분야(12.9%), 산업응용분야(4.8%), 의료분야(4.1%), 건설분야(3.7%)의 순이다. 2009년의 경우 수료자(340명) 중 가장 많은 기계장비분야(149명)에 속한 운전직종이 118명(전체의 34.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서비스분야(99명)에 속한 음식서비스 직종이 91명(전체의 26.8%)로 이들 두 직종이 전체 수료자의 72.9%를 차지하고 있다<sup>18)</sup>.

<표 10> 예산사업 직업훈련 수료 후 직업복귀자 훈련분야별 현황

(단위: 명, %)

	2010		2009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 체	1,191	100.0	2,502	100.0
기계장비분야	523	43.9	1,017	40.6
서비스분야	290	24.3	683	27.3
사무관리분야	103	8.6	229	9.2
의료분야	82	6.9	154	6.2
건설분야	43	3.6	120	4.8
정보통신분야	32	2.7	83	3.3
공예분야	31	2.6	18	0.7
산업응용분야	24	2	67	2.7
전기분야	19	1.6	40	1.6
전자분야	11	0.9	21	0.8
섬유분야	10	0.8	26	1.0
기타	23	1.9	44	1.8

자료: 근로복지공단(2011), 「2010년 직업훈련지원사업 실적분석」, 내부자료.

16) 근로복지공단(2010), 「2009년도 직업훈련지원사업 실적분석」, 내부자료.

17) 2010년 예산사업 직업훈련 선발자 2,076명 중 기계장비분야(864명)의 세부 훈련직종 운전분야가 686명(전체의 33.0%)이며, 이 중 운전면허(대형) 366명(전체의 17.6%), 굴삭기 108명(전체의 5.2%), 지게차 92명(전체의 4.4%)이다. 서비스분야 547명(전체의 26.3%)의 세부 훈련직종 음식서비스분야가 436명(전체의 21.0%)이며, 이 중 한식조리 243명(전체의 11.7%), 제과제빵 71명(전체의 3.4%), 양식조리 36명(전체의 1.7%)이다.

18) 근로복지공단(2010), 「2009년 직업훈련지원사업 실적분석」, 내부자료.

직업훈련 수료 후 직업복귀자는 2010년 예산사업의 경우 1,191명이며, 이들을 훈련분야별로 보면, 기계장비분야가 43.9%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서비스분야(24.3%), 사무관리분야(8.6%), 의료분야(8.6%), 건설분야(3.6%)의 순이다<sup>19)</sup>.

직업재활급여의 경우 수료 후 직업복귀자는 343명이며, 이들을 훈련분야별로 보면 기계장비분야가 45.5%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서비스분야(24.5%), 건설분야(10.5%), 의료분야(5.0%), 사무관리분야(4.4%)의 순이다<sup>20)</sup>(표 11 참조).

훈련직종과 직업복귀 직종간의 연관성은 2010년 예산사업의 경우 조사된 직업복귀자 1,182명 중 424명(35.9%)이 연관성이 있는 직종에 취업하였으며, 나머지 64.1%(758명)는 연관성이 없는 직종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재활급여의 경우는 조사된 직업복귀자 343명 중 37.6%(129명)이 연관성이 있는 직종에 취업하였으며, 나머지 62.4%(214명)는 연관성이 없는 직종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2 참조).

<표 11> 직업재활급여 직업훈련 수료 후 직업복귀자 훈련분야별 현황

(단위 : 명, %)

	2010		2009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 체	343	100.0	127	100.0
기계장비분야	156	45.5	70	55.1
서비스분야	84	24.5	28	22.0
건설분야	36	10.5	5	3.9
의료분야	17	5.0	8	6.3
사무관리분야	15	4.4	8	6.3
기타	35	10.2	8	6.3

<표 12> 훈련직종과 직업복귀 직종의 연관성 여부(2010)

(단위 : 명, %)

	연관성 유	연관성 무	전체
예 산	424 (35.9)	758 (64.1)	1,182 (100.0)
급 여	129 (37.6)	214 (62.4)	343 (100.0)

자료 : 근로복지공단(2011), 「2010년 직업훈련지원사업 실적분석」 내부자료.

19) 근로복지공단(2011), 「2010년 직업훈련지원사업 실적분석」, 내부자료.

20) 근로복지공단(2011), 「2010년 직업훈련지원사업 실적분석」, 내부자료.

### 6. 직업복귀자 고용형태 및 임금수준

직업복귀자의 고용형태는 2010년 예산사업의 경우 조사된 직업복귀자 2,502명 중 비정규직 60.8%, 정규직 31.2%, 자영업 8.0%로 나타났다. 이를 2009년과 비교하면 비정규직이 5.0%p 감소하고 반면에 정규직 3.1%p 증가, 자영업 1.9%p 증가한 것이다.

직업재활급여는 조사된 직업복귀자 127명 중 비정규직 51.2%, 정규직 38.6%, 자영업 10.2%로 나타났다. 이를 2009년과 비교하면 비정규직이 7.7%p 증가한 반면에 정규직이 5.4%p 감소, 자영업 2.3%p 감소한 것이다(표 13 참조).

<표 13> 직업훈련 수료 후 직업복귀자 고용형태

(단위: 명, %)

	연도	비정규직	정규직	자영업	전체
예산	2010	664 (55.8)	409 (34.3)	118 (9.9)	1,191 (100.0)
	2009	1,520 (60.8)	781 (31.2)	201 (8.0)	2,502 (100.0)
급여	2010	202 (58.9)	114 (33.2)	27 (7.9)	343 (100.0)
	2009	65 (51.2)	49 (38.6)	13 (10.2)	127 (100.0)

자료: 근로복지공단(2011), 「2010년 직업훈련지원사업 실적분석」, 내부자료.

직업복귀자의 임금수준은 2010년 예산사업은 조사된 1,191명의 1인 평균 1,190,579원이며, 직업재활급여는 조사된 343명의 1인 평균 1,229,901원으로 나타났다(표 14 참조).

<표 14> 2010년 직업복귀자 임금수준 현황

(단위: 명, %, 원)

	50만 원 미만	50 ~ 100만 원 미만	100 ~ 150만 원 미만	150 ~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전체	평균
예산	174 (14.6)	396 (33.2)	369 (31.0)	179 (15.0)	73 (6.1)	1,191 (100.0)	1,190,579
급여	57 (16.6)	102 (29.7)	100 (29.2)	52 (15.2)	32 (9.3)	343 (100.0)	1,229,901

자료: 근로복지공단(2011), 「2010년 직업훈련지원사업 실적분석」, 내부자료.

### 7. 직업훈련 중단자 현황

직업훈련기간 중 중도에 중단한 경우는 2010년 예산사업 382명, 직업재활급여 166명이다(표 15 참조). 중단사유는 예산사업의 경우 출석미달이 31.9%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훈련기간중 취업(자영)(27.2%), 건강악화(9.7%)의 순이다. 직업재활급여 훈련 중단사유는 2010년 훈련중 취업(자영)이 29.5%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출석미달(27.1%), 건강악화(13.3%)의 순이다. 이와 같은 직업훈련 중단자 비율이 예산사업의 경우 2008년 5.5%(4,814명 중 263명), 2009년 24.8%(2,560명 중 635명), 2010년 20.6%(1,850명 중 382명)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직업재활급여의 경우 직업훈련 중 중단자는 2009년 1.4%(4,972명 중 70명)에서 2010년 9.5%(1,750명 중 166명)로 증가하였다.

직업훈련기간 중 중단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 사유로 ‘직업훈련기간중 취업(자영)’ 및 ‘생계’로 인한 요인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직업훈련수당이 충분치 못한 데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직업훈련수당의 현실화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된다. 또한 훈련부적응이 8~10%를 차지하고 있음은 훈련직종 선택에 있어 직업적성의 고려가 충분치 못했음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건강악화로 인한 중단도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훈련기간중 전문적인 건강보살핌이 제도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sup>21)</sup>. 출석미달로 인한 훈련중단도 30% 내외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 및 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표 15〉 직업훈련 중단자 사유별 현황

(단위: 명, %)

	직업훈련 실시 미이행	출석 미달	훈련 부적응	직업훈련 포기				기타 (지시위반, 허위 등)	전체	
				취업 (자영)	생계	건강 악화	기타			
예산	'09	23 (3.6)	184 (29.0)	67 (10.6)	193 (30.4)	28 (4.4)	85 (13.4)	50 (7.9)	5 (0.8)	635 (100.0)
	'10	12 (3.1)	122 (31.9)	24 (6.3)	104 (27.2)	11 (2.9)	37 (9.7)	66 (17.3)	6 (1.6)	382 (100.0)
급여	'09	1 (1.4)	28 (40.0)	9 (12.9)	20 (28.6)	3 (4.3)	6 (8.6)	3 (4.3)	-	70 (100.0)
	'10	1 (0.6)	45 (27.1)	14 (8.4)	49 (29.5)	9 (5.4)	22 (13.3)	26 (15.7)	-	166 (100.0)

자료: 근로복지공단(2011), 「2010년 직업훈련지원사업 실적분석」, 내부자료.

21) 독일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원의 경우 훈련원 내에 의료시설과 의료인력을 갖추고 있어 훈련생의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 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산재보험의 산재장해인에 대한 직업훈련사업을 2008년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법정급여가 보장되는 직업재활급여사업과 1985년부터 예산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직업훈련사업으로 나누어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하는 본문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요약하고 아울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1. 최근 3년간(2008 ~ 2010) 198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예산사업에 의한 직업훈련이 감소하고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직업재활급여에 의한 훈련이 증가하고 있다.

2. 직업훈련 수료자의 평균 훈련기간이 감소하고 있다. 훈련직종 중 대형운전면허 등의 단기간 훈련직종 선택에 의한 영향이 있다고 하나 중장기적으로는 장기 훈련기간을 요하는 훈련과정을 통하여 전문적 능력을 갖추으로써 안정적 일자리 확보와 저임금에서 벗어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3. 중증장해인에 대한 지원이 미약하다. 훈련자 중 장애등급 제10~12급이 차지하는 비중에 높음은 중증장해인에 대한 지원이 적음을 의미하며, 특히 장애등급 제1~3급에 대한 훈련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중증장해인에 대한 직업훈련 모델의 개발이 요구된다.

4. 직업훈련 직종이 편중되어 있다. 기계장비분야에 속한 운전직종과 서비스분야에 속한 음식서비스 직종이 전체 수료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예산사업 56.7%, 직업재활급여 72.9%). 이와 같은 훈련직종의 편중은 중장기적으로 훈련수료 후 취업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미취업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구인처의 개발이 필요하다.

5. 훈련직종과 직업복귀 직종간에 미스매치가 심하다. 수료 후 취업자의 훈련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직종에의 취업률이 40% 미만이다(예산사업 35.9%, 직업재활급여 37.6%). 이와 같은 미스매치는 훈련비용의 낭비요인이 된다. 훈련생 선발시 충분한 직업적성 상담 평가 및 훈련수료 후 취업 일자리시장과 연계한 선발이 될 수 있도록 직업재활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6. 직업훈련 중단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직업훈련 중단자 비율이 예산사업의 경우 2008년 5.5%, 2009년 24.8%, 2010년 20.6%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직업재활급여의 경우 2009년 1.4%에서 2010년 9.5%로 증가하였다. 이는 충분치 못한 직업훈련수당, 훈련직종 선택에 있어 불충분한 직업적성의 고려, 훈련기간 중 체계적 건강돌봄제도의 취약 등에 기인한바, 이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각년도.

\_\_\_\_\_, 『산업재해분석』, 각년도.

근로복지공단(2009), 「2008년 직업훈련지원사업 실적분석」, 내부자료.

\_\_\_\_\_(2010), 「2009년 직업훈련지원사업 실적분석」, 내부자료.

\_\_\_\_\_(2011), 「2010년 직업훈련지원사업 실적분석」, 내부자료.

\_\_\_\_\_(2009), 「2008년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 현황분석」, p.9.

\_\_\_\_\_(2010), 「2009년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 현황분석」, pp.30~31.

대통령정책자문기획위원회(2006), 「사회비전 2030 - 선진복지국가를 위한 비전과 전략」,  
p.34.